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립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입학자원 감소, 지방대학 기피 현상 등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 공립대와 국립대의 통합 논의가 활발한 상황으로, 경상북도 직속 공립대학인 경북도립대학교와 국립안동대학교가 통합하여 2025년 3월 1일 통합대학(국립경국대학교)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바, 통합대학의 명칭을 반영하고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 통폐합에 따라 기존 국립안동대학교 명칭을 통합대학 명칭인 국립경국대학교로 변경
(별표 1, 별표 6, 별표 8)
- 나.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의 학생 보호, 교원 및 조교의 고용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규정을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규제심사 예정

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

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 중 “국립안동대학교”를 “국립경국대학교”로 한다.

별표 6 중 “국립안동대학교”를 “국립경국대학교”로 한다.

별표 8 중 “국립안동대학교”를 “국립경국대학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교 명칭이 변경되는 국립안동대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안동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국립경국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.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립안동대학교에 입학한 허가받은 사람은 국립경국대학교에 입학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안동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경국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안동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. ④ 이 영 시행 당시 국립안동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립경국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.

제3조(폐지되는 경북도립대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경북도립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과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한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30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경국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경국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경국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전문대학이나 국립경국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④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북도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 조교는 국가공무원 순증 인원만큼 국립경국대학교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본다. 또한, 소속 변경되는 교원의 호봉은 폐지된 대학의 기존 호봉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. ⑤ 이 영 시행 당시 경북도립대학교 소속 지방공무원(직원)은 국립경국대학교의 국가공무원 순증 인원만큼 특별채용할 수 있다.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 중 “국립안동대학교”를 “국립경국대학교”로 한다. ② 「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2호나목 중 “국립안동대학교”를 “국립경국대학교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별표 1]

학교의 명칭 · 소재지 및 과정(제3조 관련)

1. 대학

학교명	소재지	학교명	소재지
국립강릉원주대학교	강원특별자치도	국립경국대학교	경상북도
강원대학교	강원특별자치도	전남대학교	광주광역시 · 전라남도
경북대학교	대구광역시 · 경상북도	전북대학교	전북특별자치도
경상국립대학교	경상남도	제주대학교	제주특별자치도
국립공주대학교	충청남도 · 세종특별자치시	국립창원대학교	경상남도
국립군산대학교	전북특별자치도	충남대학교	대전광역시 · 세종특별자치시
국립금오공과대학교	경상북도	충북대학교	충청북도 · 세종특별자치시
국립목포대학교	전라남도	한경국립대학교	경기도
국립목포해양대학교	전라남도	국립한국교통대학교	충청북도 · 경기도
국립부경대학교	부산광역시	한국체육대학교	서울특별시
부산대학교	부산광역시 · 경상남도	국립한국해양대학교	부산광역시
서울과학기술대학교	서울특별시	국립한밭대학교	대전광역시 · 세종특별자치시
국립순천대학교	전라남도		

[별표 6]

대학의 부속시설등과 사무국 및 처·실·본부·단 등의 하부조직에
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범위(제9조제5항 관련)

학교명	과 · 담당관
국립강릉원주대학교	10
강원대학교	15
경북대학교	15
경상국립대학교	14
국립공주대학교	11
국립군산대학교	10
국립금오공과대학교	3
국립목포대학교	9
국립목포해양대학교	1
국립부경대학교	11
부산대학교	13
서울과학기술대학교	9
국립순천대학교	10
국립경국대학교	10
전남대학교	16
전북대학교	11
제주대학교	11
국립창원대학교	10
충남대학교	12
충북대학교	11
한경국립대학교	7
국립한국교통대학교	10
한국체육대학교	2
국립한국해양대학교	10
국립한밭대학교	7

[별표 8]

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설치범위(제9조제7항 관련)

학교명	행정실	학교명	행정실
국립강릉원주대학교	5	국립경국대학교	4
강원대학교	12	전남대학교	13
경북대학교	12	전북대학교	10
경상국립대학교	12	제주대학교	8
국립공주대학교	7	국립창원대학교	5
국립군산대학교	4	충남대학교	10
국립금오공과대학교		충북대학교	8
국립목포대학교	4	한경국립대학교	2
국립목포해양대학교		국립한국교통대학교	5
국립부경대학교	6	한국체육대학교	
부산대학교	12	국립한국해양대학교	4
서울과학기술대학교	4	국립한밭대학교	3
국립순천대학교	4	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919